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75

발의연월일: 2024. 7. 12.

발 의 자:김도읍·권성동·주진우

윤한홍 • 조지연 • 이성권

구자근 · 김예지 · 신동욱

유상범 · 장동혁 · 이달희

김대식 • 박대출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·문화·복지·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. 이에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,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·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음.

하지만 근로자들의 돌봄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거의 전무함. 부산의 경 우에도 주거단지에 밀집되어 있을 뿐, 산업단지 내에 돌봄센터가 있는 곳이 없는 실정임.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 시간동안 근로자 자녀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'다함께돌봄센터'설치·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산업단지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·가정 양립은 물론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(제46조의2 제4항 및 제46조의9 신설).

법률 제 호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6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지원단지에 종사자들의 일·가정 양립을 위하여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6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6조의9(직장어린이집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·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함께돌봄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적용례) 제4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성된 지원단 지의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6조의2(지원단지의 조성 등의	제46조의2(지원단지의 조성 등의
특례) ① ~ ③ 생 략)	특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시・도지사 및 시장・군수
	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
	되는 지원단지에 종사자들의 일
	• 가정 양립을 위하여 「아동
	복지법」 제44조의2에 따른 다
	함께돌봄센터를 설치 · 운영할
	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<u> <신 설></u>	제46조의9(직장어린이집 설치ㆍ
	운영에 관한 지원) 국가 또는
	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내
	입주기업이 「영유아보육법」
	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
	<u>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</u>
	이에 대한 행정적・재정적 지
	원을 할 수 있다.